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03
------------	-----

2012년 6월 25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청 제출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2012년 6월 25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통정책관 백 호)

가. 제안이유

-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방송광고의 종류에 교통정보 및 기상정보를 추가 신설하는 한편, 방송이 종료된 DMB 라디오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따라서 방송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경비·물품·용역 등을 제공 받고 그 제공자의 명칭 또

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를 “협찬방송”에서 “협찬고지”로 변경함(안 제12조 및 별표 1)

- “협찬고지대가 기준”의 협찬명에 “교통정보 및 기상정보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비교란 중 항목 2와 항목 3 중 “DMB라디오”를 삭제함(안 별표 1)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안석수)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의 용어 정의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 <별표1>에 협찬고지<sup>1)</sup>가 가능한 대상 협찬명을 추가하며,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2조상에 규정된 “협찬방송”을 “협찬고지”로 변경하고 있는바 이는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sup>2)</sup>상의 용어와 동일하도록 용어를 조정한 것으로 조례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제12조 [별표 1]에서 “1분 교통정보”, “수시 교통정보프로그램”, “50분 교통정보”, “기상정보 그 외 프로그램”에 대해 시간대별로 협찬고지대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2011년 8월 방송법 시행령이 교통방송의 협찬고지시 대가를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sup>3)</sup> 동 조례가 개정될 경우 tbs 교통방송의 세외 수입이 증대되어 재정자립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동 조례 개정은 2011년 8월에 관련법규가 개정된 사항을 1년여가 지난 지금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1년여 기간 동안 광고수입

---

1) “협찬고지”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에 그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브랜드 등을 노출시키는 등의 광고 기법

2) 법률 제6139호, 2000.1.12

3) 대통령령 제23087호, 2011.8.19

확보 기회를 상실하였음. 따라서 교통방송은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규의 변경사항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또한 교통방송이 제안한 동 개정조례안 제12조 [별표1]의 협찬고지대가 기준액은 지상파 주요 매체 3사(KBS, MBC, SBS)의 공익성 캠페인 협찬고지대가 대비 약 20~44% 수준임(붙임 4 참조)

향후, 방송청취율을 높여 협찬고지대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2조 [별표1]의 비고란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중 DMB 라디오를 삭제하고 있음. 이는 “DMB 라디오”가 2011년 11월 회선사용료 대비 사업효과가 미미하여 방송이 종료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협찬방송”을 각각 “협찬고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1호 중 “협찬방송”을 “협찬고지”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시급적용 기준 (라디오방송)

별표 1의 비고란의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별표 1]

**협찬고지대가 기준(제12조 관련)**

협찬명	시급	방송시간대 (단위: 시)	멘트 횟수	기준(원)
공익성 캠페인 (40초 기준)	A	07 ~ 08, 18 ~ 20	1회	200,000
		09 ~ 17	"	150,000
	B	06, 21 ~ 23	"	130,000
	C	00 ~ 05	"	100,000
<u>1분 교통정보</u> <u>수시교통정보</u> <u>프로그램</u>	A	<u>07 ~ 08,</u> <u>18 ~ 20</u>	<u>전·후 각1회</u>	<u>170,000</u>
		<u>09 ~ 17</u>	<u>전·후 각1회</u>	<u>140,000</u>
		<u>06,</u> <u>21 ~ 23</u>	<u>전·후 각1회</u>	<u>120,000</u>
	C	<u>00 ~ 05</u>	<u>전·후 각1회</u>	<u>100,000</u>
<u>50분 교통정보</u> <u>기상정보</u> <u>그 외 프로그램</u>	A	<u>07 ~ 08,</u> <u>18 ~ 20</u>	<u>전·후 각1회</u>	<u>160,000</u>
		<u>09 ~ 17</u>	<u>전·후 각1회</u>	<u>130,000</u>
		<u>06,</u> <u>21 ~ 23</u>	<u>전·후 각1회</u>	<u>110,000</u>
	C	<u>00 ~ 05</u>	<u>전·후 각1회</u>	<u>100,000</u>
교통 특별방송 (설날, 추석) 등 공익성 대형 기획프로그램	전일	00 ~ 23	회사별 매시간 2회	40,000,000
공익 행사 (문화예술, 스포츠 등)	"	00 ~ 23	1회	200,000

비 고

1. 대가기준 이외의 **협찬고지** 대가는 본 표를 기준으로 산정함.

단, 방송법시행령 제60조제1항4호에 따른 협찬의 경우에는 협찬금이 아닌, 시상품, 경품, 장소, 의상, 소품, 정보 등을 협찬하는 것으로 함.

2. 시급적용 기준 (라디오방송)

06시	07시	21시	24시
C	B	A	B C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2조(협찬방송) ① (생략)</b></p> <p><b>② 협찬방송</b>에 대한 협찬내역은 방송내용·방송시간 및 협찬고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b>협찬방송</b>대가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b>③ 시장</b>은 <b>협찬방송</b>의 협찬자 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b>협찬방송</b> 모집업무를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모집금액의 16.5퍼센트 이내로 한다.</p>	<p><b>제12조(협찬고지) ① (현행과 같음)</b></p> <p><b>② 협찬고지</b>----- ----- ----- <b>협찬고지</b>----- -----.</p> <p><b>③</b> ----- <b>협찬고지</b>----- ----- ----- <b>협찬고지</b> ----- ----- -----.</p>																																																																													
[별표 1]	[별표 1]																																																																													
<b>협찬방송대가 기준(제12조 관련)</b>	<b>협찬고지대가 기준(제12조 관련)</b>																																																																													
<table border="1"> <thead> <tr> <th>협찬명</th> <th>시급</th> <th>방송시간대 (단위: 시)</th> <th>멘트 횟수</th> <th>기준(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공익성 캠페인 (40초 기준)</td> <td rowspan="2">A</td> <td>07 ~ 08, 18 ~ 20</td> <td>1회</td> <td>200,000</td> </tr> <tr> <td>09 ~ 17</td> <td>"</td> <td>150,000</td> </tr> <tr> <td rowspan="2">B</td> <td>06, 21 ~ 23</td> <td>"</td> <td>130,000</td> </tr> <tr> <td>C</td> <td>00 ~ 05</td> <td>"</td> <td>100,000</td> </tr> <tr> <td>교통 특별방송 (설날, 추석) 등 공익성 대형 기획프로그램</td> <td>전일</td> <td>00 ~ 23</td> <td>회사별 매시간 2회</td> <td>40,000,000</td> </tr> <tr> <td>공익 행사 (문화예술, 스포츠 등)</td> <td>"</td> <td>00 ~ 23</td> <td>1회</td> <td>200,000</td> </tr> </tbody> </table>	협찬명	시급	방송시간대 (단위: 시)	멘트 횟수	기준(원)	공익성 캠페인 (40초 기준)	A	07 ~ 08, 18 ~ 20	1회	200,000	09 ~ 17	"	150,000	B	06, 21 ~ 23	"	130,000	C	00 ~ 05	"	100,000	교통 특별방송 (설날, 추석) 등 공익성 대형 기획프로그램	전일	00 ~ 23	회사별 매시간 2회	40,000,000	공익 행사 (문화예술, 스포츠 등)	"	00 ~ 23	1회	200,000	<table border="1"> <thead> <tr> <th>협찬명</th> <th>시급</th> <th>방송시간대 (단위: 시)</th> <th>멘트 횟수</th> <th>기준(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공익성 캠페인 (40초 기준)</td> <td rowspan="3">A</td> <td>07 ~ 08, 18 ~ 20</td> <td>1회</td> <td>200,000</td> </tr> <tr> <td>09 ~ 17</td> <td>"</td> <td>150,000</td> </tr> <tr> <td>06, 21 ~ 23</td> <td>"</td> <td>130,000</td> </tr> <tr> <td>C</td> <td>00 ~ 05</td> <td>"</td> <td>100,000</td> </tr> <tr> <td rowspan="6">1분 교통정보 수시교통정보 프로그램</td> <td rowspan="3">A</td> <td>07 ~ 08, 18 ~ 20</td> <td>전·후 각1회</td> <td>170,000</td> </tr> <tr> <td>09 ~ 17</td> <td>전·후 각1회</td> <td>140,000</td> </tr> <tr> <td>06, 21 ~ 23</td> <td>전·후 각1회</td> <td>120,000</td> </tr> <tr> <td rowspan="3">B</td> <td>00 ~ 05</td> <td>전·후 각1회</td> <td>100,000</td> </tr> <tr> <td rowspan="2">A</td> <td>07 ~ 08, 18 ~ 20</td> <td>전·후 각1회</td> <td>160,000</td> </tr> <tr> <td>09 ~ 17</td> <td>전·후 각1회</td> <td>130,000</td> </tr> <tr> <td>B</td> <td>06,</td> <td>전·후 각1회</td> <td>110,000</td> </tr> </tbody> </table>	협찬명	시급	방송시간대 (단위: 시)	멘트 횟수	기준(원)	공익성 캠페인 (40초 기준)	A	07 ~ 08, 18 ~ 20	1회	200,000	09 ~ 17	"	150,000	06, 21 ~ 23	"	130,000	C	00 ~ 05	"	100,000	1분 교통정보 수시교통정보 프로그램	A	07 ~ 08, 18 ~ 20	전·후 각1회	170,000	09 ~ 17	전·후 각1회	140,000	06, 21 ~ 23	전·후 각1회	120,000	B	00 ~ 05	전·후 각1회	100,000	A	07 ~ 08, 18 ~ 20	전·후 각1회	160,000	09 ~ 17	전·후 각1회	130,000	B	06,	전·후 각1회	110,000
협찬명	시급	방송시간대 (단위: 시)	멘트 횟수	기준(원)																																																																										
공익성 캠페인 (40초 기준)	A	07 ~ 08, 18 ~ 20	1회	200,000																																																																										
		09 ~ 17	"	150,000																																																																										
	B	06, 21 ~ 23	"	130,000																																																																										
		C	00 ~ 05	"	100,000																																																																									
교통 특별방송 (설날, 추석) 등 공익성 대형 기획프로그램	전일	00 ~ 23	회사별 매시간 2회	40,000,000																																																																										
공익 행사 (문화예술, 스포츠 등)	"	00 ~ 23	1회	200,000																																																																										
협찬명	시급	방송시간대 (단위: 시)	멘트 횟수	기준(원)																																																																										
공익성 캠페인 (40초 기준)	A	07 ~ 08, 18 ~ 20	1회	200,000																																																																										
		09 ~ 17	"	150,000																																																																										
		06, 21 ~ 23	"	130,000																																																																										
	C	00 ~ 05	"	100,000																																																																										
1분 교통정보 수시교통정보 프로그램	A	07 ~ 08, 18 ~ 20	전·후 각1회	170,000																																																																										
		09 ~ 17	전·후 각1회	140,000																																																																										
		06, 21 ~ 23	전·후 각1회	120,000																																																																										
	B	00 ~ 05	전·후 각1회	100,000																																																																										
		A	07 ~ 08, 18 ~ 20	전·후 각1회	160,000																																																																									
			09 ~ 17	전·후 각1회	130,000																																																																									
B	06,	전·후 각1회	110,000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1. 대가기준 이외의 <b>협찬방송</b> 대가는 본 표를 기준으로 산정함. 단, 방송법시행령 제60조제1항4호에 따른 협찬의 경우에는 협찬금이</p>																																																																														



아닌, 시상품, 경품, 장소, 의상, 소품, 정보 등을 협찬하는 것으로 함.

**2. DMB 라디오는 라디오 기준을 준수하되 협찬방송대기인 경우에는 총액의 10퍼센트로 함.**

**3. 시급적용 기준 (라디오방송·DMB 라디오)**

	06시	07시	21시	24시	
C	B	A	B	C	

		<b>21 ~ 23</b>		
	<b>C</b>	<b>00 ~ 05</b>	<b>전·후 각1회</b>	<b>100,000</b>
교통 특별방송 (설날, 추석) 등	전일	00 ~ 23	회사별 매시간 2회	40,000,000
공익성 대형 기획프로그램 공익 행사 (문화예술, 스포츠 등)	"	00 ~ 23	1회	200,000
비 고				
1. 대가기준 이외의 <b>협찬고지</b> 대가는 본 표를 기준으로 산정함. 단, 방송법시행령 제60조제1항4호에 따른 협찬의 경우에는 협찬금이 아닌, 시상품, 경품, 장소, 의상, 소품, 정보 등을 협찬하는 것으로 함.				
<b>2. 시급적용 기준 (라디오방송)</b>				
	06시	07시	21시	24시
C	B	A	B	C